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4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발주기관	국 토 연 구 원

2024. 7.

담당	기관	부서	성명	TEL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인희	044-960-0673

목 차

I. 과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비	1
4. 사업주요내용	1
I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 과업배경	1
2. 과업목적	2
III. 과업내용	2
1. 주요과업내용	2
가.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관리	2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3
다. 산업단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라. 보안관리 지원	3
마. 운영관리 지원	4
바. 보안장비 임대	4
2. 세부과업내용	4
가. 시스템 유지관리	4
나. 운영인력	6
다. 추진일정	6
라. 시스템 장애대책	6
마.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7

3. 과업수행지침	8
가. 일반지침	8
나. 세부지침	9
4. 보고서 및 성과품	9
가. 일반사항	9
나. 성과품 및 제출시기	10
5. 보안대책	11
6. 기타사항	13
<붙임>	14
붙임 1. 산업입지정보망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14
붙임 2.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6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9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20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3

I.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년 12월 20일

3. 사 업 비 : ₩103,29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주요내용

-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관리
-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 산업단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 운영서버 OS 교체 도입
- 보안장비 임대
- 운영관리 지원

I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배경

- 산업입지정보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의거 산업단지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운영 중임
- 매년 신규/변경/해제 등 산업단지 정보 관리 뿐 아니라,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정보, 분양정보,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또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정보공동 활용체계 유지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기업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한 산업입지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함

2. 과업목적

- 산업입지정보망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관리 운영업무 지원으로 산업입지정책수립 및 기업 등 산업입지정보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산업입지정보서비스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자치단체 및 기업에 정보제공 편리성 제공
- 날로 지능화되는 보안침해 사고에 대비한 정보자원의 보안취약점 강화 및 유지관리로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III. 과업내용

1. 주요과업내용

가.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관련 산출물의 현행화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기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 정보보호를 위한 자료백업 지원
- 공개, 상용S/W의 서버용량, 성능유지 및 관리

다. 산업단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업단지 도면의 신규 제작 및 수정
- 신규 제작 및 수정된 도면의 데이터베이스화, 자료 변환 및 산업입지정보망에 탑재 및 운영
- 산업단지공단 공장데이터 취득 및 개별입지 기본통계 제공
- 산업단지도면 최신화 지원을 위한 년 2회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보안관리 지원

- 보안취약사항 모니터링 및 S/W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 개인정보취약점 점검 및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과 도출 취약점에 대한 보안기능 개선

마. 운영관리 지원

- 월별 통계마감처리 지원
- 동영상 매뉴얼 품질향상 지원
- 지자체 담당자 교육지원
- 헬프데스크 및 기타 운영지원

바. 보안장비 임대

- 시스템 내/외부 분리를 위한 보안장비의 임대
- 현 보안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한 장비 선정

사. 운영서버 OS 교체 도입

- 운영서버 Unix계열 AIX OS를 Linux계열 OS로 교체 및 설치

2. 세부 과업내용

가. 시스템 유지관리

-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전산장비에 대하여 상시 안정적 운영 및 최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점검, 현황분석, 장애예방, 장애처리 및 기타지원 업무수행

구분	주요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 대한 유지관리 ※ 붙임 1. 산업입지정보망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참조 - 제도변경 및 기능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개선 ○ H/W, S/W, N/W에 대한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튜닝 - 정기적/비정기적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 업무별 각종 로그 관리 및 분석 ※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경우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 서버 가용성 확인 및 상용S/W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자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가용성 저하 시 조치) - 도입 상용S/W에 대한 패치 및 버전관리 ○ 산업입지 지도 서비스 기능 점검 / 개선
관리정보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정보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정보 현행화 지원 ○ 연계정보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별입지 연계정보 갱신(분기별) ○ 행정, 제도적 변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구, 표준산업분류코드 등 각종 코드 관리 - 행정구역 변경 등 국가표준코드체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국가조직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내용 및 관련 서식 적용
산업입지 공간 데이터 공간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에 대한 공간정보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합된 산업단지 도면자료에 대한 공간정보화 - 산업단지별 도면구축 분류체계에 따른 공간정보 작성 - 구축 산업단지 공간정보에 대한 형상 및 위치 정합성 검수 방안 제시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도면자료에 대한 이력관리(신규/수정/삭제) - 과거구축 공간정보에 대한 부정합 검토 및 단계별 갱신 (자료 미취합 시 용도지역지구도 및 연속지적도 활용) - 구축 공간정보의 서비스는 세계측지좌표계 적용 - 작성 공간정보의 시스템 적용 - 산업단지공단 공장데이터 취득 및 개별입지 기본통계 제공 - 공간 데이터베이스 최신화 위한 년 2회 공간정보 구축
보안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취약점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점 점검 지원 - 취약점 점검에 따른 도출 취약점 보안설정 적용
시스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정보망 홈페이지 관리 - 사용자 PC환경에 따른 브라우저 설정 및 각종 기술지원 ○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통계 취합, 관리 및 생성지원 - 산업단지 고시·공고 및 분양공고 등록지원 ○ 정보공동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산업입지정보 요청에 연계자료 제공지원 - 신규 연계요청 시 기술검토 지원 ○ 사용자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교재 / 강의 자료 작성 지원 - 사용자 교육 자료 제작 지원 ○ 동영상 매뉴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매뉴얼 품질 향상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관리 - 각종 통계정보 관리 - 산업단지 현황도면 제작지원 - 대민 또는 관리시스템 사용자 문의사항 대응
공통사항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산출물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보고 : 착수, 완료보고 - 정기 보고 : 사업관리자는 월간 유지관리 및 개발현황, 계획 및 이슈사항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제출 - 비정기 보고 : 작업 및 장애 시 보고서 작성 - 국토교통부 EA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제출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문서 요청 시 작성

나. 운영인력

- 운영인력 현황(3인 이상)
 - 과업책임자(PM) : IT PM 1인
 - 유지관리인력 : 응용SW개발자 또는 IT지원기술자 2명 이상
- 인력 운영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관리, 각종 보고 및 필요 시 비상주로 지원하며, 필요시 국토연구원과 협의 하에 유지관리 인력 1인 이상을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에 투입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추진일정

단위사업 일정	M	M+1	M+2	M+3	M+4.5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착수보고	▲				
○ 시스템 유지관리					
○ 관리정보 현행화					
○ 산업입지데이터 구축		▲			▲
○ 시스템 운영지원					
○ 완료보고					▲
○ 사업준공					▲

라. 시스템 장애 대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유지 및 예방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점검 및 별도 지원이 요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토연구원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마.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의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바. 운영서버 OS 교체 설치 지원

- 운용중인 DB, WAS서버의 AIX Unix OS를 Linux계열의 OS로 교체 및 설치하여야 함.
- Linux계열 OS는 최신 릴리즈 버전 중 안정성이 높은 제품 및 버전을 발주처와 협의 후 채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3.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계획 및 보안서약서(붙임3)가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유지관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세부지침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의한다.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처 및 사용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일반사항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5부	- 공휴일 포함
완료 보고서	준공 시	5부	- 유지관리 내역 - 기능 개선 내역 - 도면구축 내역
산출물 USB	준공 시	2식	- 완료보고서, 현행화된 설계서,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포함 - 도면구축 산출물 별도제출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별첨1]의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별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요청을 하여 결과를 통보 받아 시행하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액의 한도 내에서 감독관과 협의 하에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산업입지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자 계약 시까지 당해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유지관리 대가는 전년도 계약금을 기준으로 차기년도 예산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과업수행사항과 관련 서류 일체를 사업종료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산업입지정보망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로그인	로그인	
	사용자 신청	
지정계획	지정계획 현황	
	지정계획 총괄표	
인허가 관리	등록관리	
	진행관리	
	주민공람목록	
	접근경로목록	
산업입지 소개	정책소개	산업입지개요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유형
		주요추진시책
	개발절차	
	최근주요정책	
	이용안내	
산업입지 현황	산업단지찾기	
	고시/공고	
	분양공고	
	개별입지찾기	
	지정/해제 통보	
	도면 통보	
	자료갱신확인	
통계현황	통계검색	
	통계자료실	
	동향지	
열린소식	뉴스자료	
	자료실	
	공지사항	
	FAQ	
	관련사이트	
시스템관리	내정보 관리	
	내 관리 산업단지 조회	
	사용자 가입신청	
	사용자 관리	
	코드 관리	산업단지 코드 관리
		공통 코드 관리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지역 코드 관리
		업종 코드 관리
		기관 관리
	팝업 공지사항	
	통계관리	통계마감처리
		통계처리
		통계증감내역확인
		통계년월관리
	지정/해제 조회	
지도 서비스	산업단지 검색	
	산업단지 공간검색	
	공장 검색	
	공장 공간검색	
	주소 검색	
	주제도	
대시보드	단지수	
	지정면적	
	년도별 산업단지 현황	
	지정면적 및 산업시설용지 면적 추이(개발대상면적)	
	개발대상면적 및 개발면적 추이	
	분양공고면적 및 분양면적 추이	
	단지유형별 현황	
	사업주체별 단지수	
	개발상태별 단지수	
	분양상태별 단지수	
	시설용지별 분양현황	
	재생사업 지구지정현황	
기타	정책안내	
	개발절차	
	이용안내	
	오시는길	

[붙임 2]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 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 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전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별
심 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중 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관리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관리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관리를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구분	위 규 사 항	처 별
	<p>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p> <p>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p> <p>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p> <p>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관리를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관리를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관리업무 외 인터넷 접속</p>	<p>○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p> <p>○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p> <p>○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p>
경 미	<p>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p> <p>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p> <p>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p>	<p>○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p> <p>○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p>

구분	위 규 사항	처 별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